

재직공직자의 공직자윤리법상 의무

- 01 재산등록 및 공개
- 02 주식백지신탁
- 03 선물신고
- 04 부정청탁·알선 신고
- 05 취업청탁 제한



01 재산등록 및 공개

정무직 공무원, 4급 이상(특정분야 7급 이상) 공무원, 공직유관단체 임원 등은 본인 및 이해관계자의 재산을 등록해야 하며, 그 중 1급 이상 공무원 등 고위공직자의 재산등록 사항은 관보·공보 등을 통해 공개됩니다.

재산등록

● 근거 조항

공직자윤리법 제3조, 제5조, 제6조

● 대상자

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정무직 공무원, 4급 이상 공무원, 법관·검사, 대령 이상 장교, 총경 이상의 경찰공무원, 소방정 이상의 소방공무원, 공직유관단체 임원 등

경찰·소방·감사·조세·건축·토목·식품위생·회계 등 특정분야 7급 이상, 금융감독원 4급 이상, 한국은행·예금보험공사·원자력발전 공직유관단체 2급 이상은 재산등록 대상

● 대상재산

본인, 배우자 및 본인의 직계 존비속*이 보유한 부동산·동산 등의 모든 재산

* 부모, 자녀, 조부모, 손자녀 등. 출가한 女와 외조부모 및 외손자녀 제외. 친부모가 아닌 계부모, 양부모, 양자녀, 며느리, 형제자매 등은 직계존비속이 아니므로 재산등록대상이 아님

직계 존비속의 재산에 대한 고지 거부(법 제12조제4항)

- ✓ 등록의무자의 부양을 받지 아니하는 직계 존비속에 대해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재산등록을 하지 않을 수 있음
- ✓ 기준일로부터 1개월 이내, 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 서식에 독립생계 관련 증빙 자료를 첨부하여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허가 신청
 - ※ 고지거부 허가는 3년간 유효



Q 이혼한 배우자가 본인의 친자녀를 양육하고 있을 경우 친자녀의 재산을 신고해야 하나요?

A 양육 주체와 관계없이 친자녀는 직계비속에 해당되므로 신고해야 합니다.

Q 형제가 모두 신고의무자인 경우 부모 재산을 누가 신고하는가요?

A 모두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. 다만, 형제 중 실제로 부모를 봉양하지 않는 신고의무자는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고지거부 허가를 신청할 수 있고, 허가를 얻는다면 부모의 재산을 신고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.

【등록(신고) 대상 재산의 종류】

신고 항목	내 용
① 토지	• 소유권·지상권·전세권(면적, 공시지가 등)
② 건물	• 소유권·지상권·전세권(면적, 공시가격 등)
③ 부동산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권리와 자동차·건설기계·선박 및 항공기	• 광업권, 어업권, 자동차·건설기계 등 소유권 및 저장권 등
④ 현금	• 소유자별 1천만원 이상 소유 시 신고
⑤ 예금(보험, 양도성예금증서 등 포함)	• 소유자별 1천만원 이상 소유 시 신고
⑥ 정치자금법에 따른 정치자금의 수입 및 지출을 위한 예금계좌의 예금	• 정치자금법 제3조 제1호에 따른 정치자금(당비, 후원금, 기탁금 등)
⑦ 증권(주식·국채·공채·회사채·백지신탁·주식매수선택권 등)	• 소유자별 1천만원 이상 소유 시 신고 • 주식매수선택권은 재산총계에 비합산
⑧ 채권(사인간 채권)	• 소유자별 1천만원 이상 소유 시 신고
⑨ 채무(사인간 채무, 건물임대채무, 금융채무)	• 소유자별 1천만원 이상 소유 시 신고
⑩ 금 및 백금(금제품 및 백금제품 포함)	• 소유자별로 500만원 이상 소유 시 신고
⑪ 보석류	• 품목당 500만원 이상 소유 시 신고

신고 항목	내용
⑫ 골동품 및 예술품	• 품목당 500만원 이상 소유 시 신고
⑬ 회원권(골프·헬스·콘도)	• 회원권당 500만원 이상 소유 시 신고
⑭ 지식재산권	• 소유자별 연간 1천만원 이상 소득이 있는 경우 신고(재산총계에 비합산)
⑮ 합명·합자·유한회사 출자지분	• 출자가액, 출자지분, 회사연간매출액
⑯ 비영리법인에 출연한 재산	• 출연재산, 보유직위(재산총계에 비합산)



Q 최초 신고(신규, 승진) 시 부동산 가액의 신고방법은 어떻게 되나요?

A 평가액과 실거래가격(취득가격, 보상액) 중 높은 금액으로 신고하되, 둘 중 어느 하나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확인 가능한 가격으로 신고합니다.

Q 변동 신고(정기변동, 퇴직 중) 시 부동산 가액의 신고방법은 어떻게 되나요?

A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실거래가격으로 신고하되, 상속·증여 등으로 실거래 가격을 알 수 없는 경우는 공시가격으로 신고합니다. 계속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의 경우에는 공시가격과 실거래 가격을 비교하여 높은 금액으로 신고합니다.

Q 건물 임대·임차에 관한 신고는 어떻게 하는지요?

A 본인 또는 이해관계자가 타인 건물을 임차하여 거주하는 경우 '건물' 항목에 임차보증금을 '전세권'으로 신고하고, 소유한 건물을 임대하고 받은 임차보증금은 '채무' 항목에 '건물임대 채무'로 신고합니다. 사글세(월세금)는 등록대상이 아닙니다.

Q 재건축에 따른 분양권은 어떻게 신고해야 하나요?

A 기존 건물은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. 분양권은 분양계약서를 참고하여 신고기준일 현재까지 납부한 금액을 '건물' 항목에 기재하고, '비고(변동사유)'란에 총분양가액을 기재합니다.

Q 상가건물은 어떻게 가액을 산정하나요?

A 상가의 경우 토지는 개별공시지가로, 건물은 지방세시가표준액으로 산정한 가액을 합산하여 신고합니다. 다만, 상가 건물 중 국세청에서 고시하는 기준시가가 있는 경우 이미 기준시가에 대지와 건물가액이 합산되어 있으므로 해당 기준시가를 가액으로 신고하면 됩니다.

Q 계좌 잔고가 1천만원이 안되어도 신고해야 하나요?

A 개인별 예금(보험 포함) 총액이 1천만원 이상이면 개별 계좌의 잔고가 1천만원 미만이라도 모두 신고해야 합니다.

Q 가입한 보험이 만기 환급금이 없는 경우에도 신고해야 하나요?

A 자동차보험 등 만기 환급금이 없는 순수 보장성 보험은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. 그러나, 일부 금액 환급 후 자동 갱신되는 상품 등은 소멸성 보험이 아니므로 신고기준일 현재 납입한 금액을 가액으로 신고합니다.

Q 모임의 총무로서 회비를 관리하거나 문중 재산을 관리하는 경우 사실상 본인 재산이 아닌데도 신고해야 하나요?

A 본인 명의 계좌는 다 신고하되, 해당 사실을 비교란에 기재합니다.

Q 주식의 가액은 어떻게 산정해야 하나요?

A 상장주식은 신고기준일의 최종거래가격, 한국장외시장(K-OTC)에서 거래되는 주식은 거래량 가중 평균가, 그 외 비상장주식은 액면가로 신고합니다.

※ '18년 11월 현재 비상장주식의 실제 가치를 반영하여 가액을 산정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국회 제출. 개정안 통과·시행 시 별도의 산식 적용 예정

● 재산등록(신고) 종류 및 시기

종류	등록대상	등록시기	고지거부 신청기간	등록내용
최초 신고	신규자	기준일로부터 2개월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	1개월 이내	등록기준일 현재의 재산
	승진자			
변동 신고	정기변동	다음해 2월말까지	1.31.까지 ※ 재심사 : 2월 말까지	12.31. 기준 현재 재산 (매년 재산변동 사항)
	의무면제자	기준일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	1개월 이내	변동일 기준 현재 재산 (최종재산 등록 이후 변동사항)
	유예복귀자			
	재등록의무자			
퇴직자				

※ 재산공개대상자는 변동신고시 주식거래내역 신고(해당 기간 중 주식 취득·양도 등 주식 거래가 있을 경우)

● 등록기관

소속기관. 다만, 정부의 재산공개 대상자는 인사혁신처

● 등록기간

의무발생일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

※ 정기변동신고는 다음해 2월말까지

● 등록방법

의무자가 공인인증서(행정전자서명인증서 또는 공인인증서)로 공직윤리시스템(<http://peti.go.kr>)에 접속하여 온라인으로 등록

※ 시스템 고객센터 전화번호 1522-4273

금융거래 및 부동산 정보 제공

- ✓ (내용) 재산등록 의무자 등의 요청에 따라 재산등록에 필요한 금융거래 및 부동산 정보를 사전에 조회·제공하여 의무자는 재산등록을 쉽고 정확하게 할 수 있음
- ✓ (제공요청) 명의인의 동의를 받은 정보제공 동의서(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의 2서식)를 공직윤리시스템에 입력
- ✓ 동의서 제출시기
 - (수시신고) 등록기준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까지. 다만, 등록기준일이 매월 1일인 경우 그 달 15일까지
 - (정기변동 신고) 매년 11월 말까지



Q 금융 및 부동산 정보 제공을 받지 못하는 해외 은행 예금이나 해외 부동산은 어떻게 신고 하나요?

A 금융 및 부동산 정보로 회신되지 않는 해외 재산의 경우에는 등록의무자가 해당 재산을 확인하여 추가로 신고합니다.

Q 재산신고 시 증빙자료를 반드시 제출해야 하나요?

A 재산신고 시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하는 의무는 없습니다. 다만, 심사과정에서 제출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제출해야 합니다. 또한, 공개대상자는 재산 변동사항 신고 시, 본인 및 이해관계자의 주식거래 내용을 신고해야 합니다.

Q 재산신고서 제출 후 수정할 수 있나요?

A 재산신고기간 중에는 언제든지 수정 가능하며, 신고마감일 이후에는 10일 이내에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수정할 수 있습니다.

● 재산등록(신고) 시 유의사항

- 재산등록 또는 변동사항 신고 기준일을 확인하여 기준일 현재의 상태로 신상 명세서 및 친족사항을 작성하고 등록기준일* 현재의 재산을 신고
* 재산등록의무 발생 시점(신규채용일, 승진일, 전보일, 퇴직일, 정기변동신고 기준일(12.31.) 등)
- 신상명세서 및 친족정보 등에 대한 거주지 주소를 도로명 주소로 표기
- 금융정보를 제공받더라도 제공되는 자료가 자동으로 입력되는 것이 아니므로 제공된 자료를 토대로 정확하게 입력해야 함
- 소유 명목과 관계없이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재산(친목회비, 문중재산, 상속재산, 무허가 주택 등), 외국 소재 재산 및 사실상 타인 소유라도 등록대상자 명의로 되어 있는 재산은 신고
- 고지거부 허가·재심사 결과를 확인하여 불허가자의 소유 재산 신고
- 고지거부 허가기간(3년)이 지났음에도 계속 유지되는 것으로 착각하여 누락하지 않도록 유의
- 불필요한 소명 방지를 위해 등록된 재산의 취득일자, 취득경위 및 소득원 등을 '비고(변동 사유)'란에 상세하게 기재
- 타인 건물에 전세를 살고 있는 경우는 전세권(임차권)을 건물항목에 신고하고, 본인 등이 소유한 건물을 타인에게 임대한 경우는 임대보증금을 채무(건물임대채무)로 신고
- 아파트 등을 분양받은 경우 중도금 무이자 대출도 채무 신고 대상이므로 누락되지 않도록 유의
- 소유자별 합계액이 1천만원 이상인 예금 및 채무는 모두 신고
※ 계좌별로 1천만원 이상인 예금 및 채무만 신고하는 것으로 오인하는 경우가 잦음
- 부동산이 부부 공동명의인 경우 각각 해당 지분만큼 신고
- 자동차보험, 화재보험 등 순수보장성 보험을 제외한 모든 보험은 신고하여야 하므로, 이외의 보험을 순수보장성 보험으로 오인하여 누락하지 않도록 유의
- 교직원공제회, 행정공제회 등 급여에서 자동이체되는 예금 및 마이너스통장(금융채무)가 누락되지 않도록 유의

【최초 재산신고 방법】

작성순서	신고 항목	주요 신고 내용
① 본인정보 수정	- 소속, 직급, 직위, 주소, 연락처 등	▶ 등록기준일 현재 상태로 작성
② 친족정보 수정	- 친족의 신상정보, 고지거부, 등록대상, 직업, 거주형태 등	▶ 등록기준일 현재 친족정보 작성 ※ 주민등록등본 참고 ※ 직계존비속이 고지거부 대상이라도 우선 등록 후 고지거부 허가 신청 ※ 최초신고 등록기준일 이전에 혼인(신고)한 딸, 사망한 직계존비속의 경우 등록하지 않음
③ 총괄표 작성	-부동산(토지·건물)	▶ 평가액(공시지가, 공시가격 등)과 실거래가격 중 높은 금액 신고, 둘 중 하나만 확인 가능한 경우 해당 금액 신고 ※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참고 ※ 평가액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 활용 또는 부동산 소재 지자체 세무과에 문의 ▶ 타인건물의 임차권(전세권)은 건물항목에 신고 ※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참고, 임대보증금 기입
	-자동차·건설기계·선박 등	▶ 자동차는 가장 최근의 자동차보험 상 차량기준 가액을 기입 ※ 자동차보험증서 참고 ▶ 광업권·어업권 등은 평가액과 실거래가격 중 높은 금액 신고, 둘 중 하나만 확인 가능한 경우 해당 금액 신고
	-예금·보험·증권, 사인 간 채권·채무 등	▶ 소유자별 합계액이 1천만 원 이상인 경우 신고 ▶ 마이너스통장의 경우 신고기준일 현재 예금 잔액이 '+'이면 '예금'에, '-'이면 '채무'에 신고 ▶ 투자신탁수익증권(펀드 등)은 예금항목에 신고 ▶ 소유 건물 (임대)보증금은 건물임대채무에 신고 ※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참고
	-금·백금	▶ 소유자별 합계액이 500만 원 이상인 경우 신고
	-보석·골동품 및 예술품	▶ 품목당 500만 원 이상인 경우 신고
	-회원권	▶ 골프, 헬스, 콘도미니엄 등 권당 500만 원 이상의 회원권은 모두 신고 ※ 골프회원권은 평가액과 실거래가격 중 높은 금액 신고, 둘 중 하나만 확인 가능한 경우 해당 금액 신고 ▶ 콘도미니엄은 부동산 소유권으로 등기되어 있어도 회원권으로 신고
	-지식재산권	▶ 소유자별 연간 1천만 원 이상의 소득이 있는 경우 신고
	-합명·합자·유한회사 출자지분	▶ 해당사항 있는 경우 신고
	-비영리법인 출연재산	▶ 해당사항 있는 경우 신고
	④ 공개목록 작성	-등록기간 종료 후 1개월 이내 관보에 공개되는 사항
⑤ 신고서 제출	-재산신고 항목 최종 확인	▶ 최종 확인 후 제출

【재산변동신고 방법】

작성순서	신고 항목	주요 신고 내용
① 본인정보 수정	-소속, 직급, 직위, 주소, 연락처 등	▶ 해당사항을 신고기준일 현재 상태로 수정
② 친족정보 수정	-친족의 신상정보, 고지 거부, 등록대상, 직업, 거주형태 등	▶ 해당사항을 신고기준일 현재 상태로 수정 및 신규 추가 ※ 사망한 자나 결혼한 딸은 등록제외
③ 총괄표 작성	-부동산(토지·건물)	▶ 매매·상속·증여 등으로 소유권이 변동된 경우, 분할·합병·증축·개축 등으로 면적이 변동된 경우, 공시가격이 변동된 경우 등 변동사항을 신고 ▶ 전세권(임차권)은 건물항목에 신고
	-자동차·건설기계·선박 등 -광업권·어업권 등	▶ 자동차는 매매시 실거래가격, 보유시 자동차 보험의 차량기준가격 등으로 신고
	-현금	▶ 현금·자기앞수표 포함 1천만 원 이상인 경우 신고
	-예금·보험·증권·사인 간 채권·채무 등 -정치자금법에 따른 정치자금의 수입 및 지출을 위한 예금계좌의 예금	▶ 소유자별 합계액이 1천만 원 이상인 경우 신고 ▶ 마이너스통장의 경우 신고기준일 현재 예금 잔액이 '+'이면 '예금' 항목에, '-'이면 '채무' 항목에 신고 ▶ 투자신탁수익증권(펀드 등)은 예금항목에 신고 ▶ 전세(임대)보증금은 건물임대채무에 신고 ▶ 정치자금용 예금계좌의 예금을 보유하여 신고 시 해당 항목에만 신고하고 '예금' 항목에는 미신고
	-금·백금	▶ 소유자별 합계액이 500만 원 이상인 경우 신고 ▶ 매입 시 매입가격, 매도 시 매도가격으로 신고
	-보석·골동품 및 예술품	▶ 품목당 500만 원 이상인 경우 신고
	-회원권	▶ 골프, 헬스, 콘도미니엄 등 권당 500만 원 이상의 회원권은 모두 신고 ▶ 골프회원권은 계속 보유 시 자치단체에 시가 표준액을 문의하여 변동사항을 신고 ▶ 콘도미니엄은 부동산 소유권으로登記되어 있어도 회원권으로 신고하고 '비고'에 면적 기재
	-지식재산권	▶ 소유자별 연간 1천만 원 이상의 소득이 있는 특허권·실용신안권·상표권 등 신고
	-합명·합자·유한회사 출자지분	▶ 해당사항 있는 경우 신고
	-비영리법인 출연재산	▶ 해당사항 있는 경우 신고
④ 변동요약서 작성	-재산변동사유, 총소득	▶ 재산항목별 증감사유 기재 ▶ 본인소득과 본인 외 소득자수 및 소득금액 기재
⑤ 공개목록 작성	-재산공개자에 한함	▶ 개인정보사항이 공개되지 않도록 작성에 주의 ▶ 토지인 경우 지목(임야, 답 등)과 지번을 기재하고, 건물인 경우 지목(주택, 아파트, 상가 등)만 기재하고 지번과 동·호수 기재 생략
⑥ 신고서 제출	-재산신고 항목 최종 확인	▶ 재산변동신고서 등을 출력하여 최종 확인 후 제출

재산공개

- 근거 조항
공직자윤리법 제10조
- 대상자
정무직 및 1급 이상 공무원,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의 법관 및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의 검사, 치안감 이상의 경찰공무원, 소방정감 이상의 소방공무원, 공기업의 장·부기관장·상임감사, 재산공개 대상 공직유관단체의 장* 등
* 매 반기말 인사혁신처장이 고시
- 공개 시기
신고기간 만료 후 1개월 이내
- 공개 내용
본인과 배우자, 직계 존비속의 재산에 관한 등록사항 및 변동사항 신고내용
- 공개 주체 및 방법
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가 관보·공보 등에 게재

공직선거후보자 등의 재산공개

- ▶ 공직선거후보자(법 제10조의2제1항)
 - (대상) 대통령·국회의원·지방자치단체장·지방의회의원 선거의 후보자
 - (제출내용) 전년도 12월 31일 현재의 등록대상 재산을 후보자 등록시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
 - (공개시기)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후보자 등록 공고시
- ▶ 국회 임명동의 공직자 및 국회선출 공직자(법 제10조의2제2항)
 - (대상) ① 대법원장·헌법재판소장·국무총리·감사원장·대법관·국회사무총장 등 그 임용에 국회의 동의를 요하는 공직자
② 헌법재판소재판관·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 등 국회에서 선출하는 공직자
 - (제출시기) 임명동의안 또는 선출안 제출시 국회에 제출
 - (제출기관) 국회
 - (공개시기) 국회의장이 지체없이 공개

📖 재산심사

- 재산심사의 내용
 - (등록사항 심사) 등록재산의 거짓기재, 잘못 기재한 내역 및 중대 과실 여부, 금융 재산의 성실 등록 여부 등
 - (형성과정 심사) 직무관련 부정한 재산 증식 여부, 타법 위반하여 부정하게 재산상 이익 취득 여부, 재산상 문제로 사회적 물의 야기 여부 등
- 심사기한
 - (공개대상자) 재산공개 후 3개월 이내 심사 완료. 부득이한 경우 공직자윤리위원회 의결로 3개월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
 - (비공개대상자) 당해 연도 심사 완료 원칙
- 심사결과와 처리
 - 심사결과 등록대상 재산을 ① 거짓으로 기재 ② 중대한 과실로 빠트리거나 잘못 기재 ③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사실이 있을 경우 법적 조치*
 - * 경고 및 시정조치, 과태료 부과, 일간신문 광고란을 통한 허위등록사실의 공표, 해임 또는 징계의결 요청
- 심서관할

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	심사 대상자
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중앙행정기관 재산등록의무자 • 지방자치단체의 장, 광역의회 의원, 시·도 교육감 •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청 소속 3급 이상 공무원
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국회의원, 국회 소속 공무원
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법관, 법원 소속 공무원
헌법재판소 공직자윤리위원회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헌법재판소재판관, 헌법재판소 소속 공무원
중앙선관위공직자윤리위원회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중앙선관위 및 각급 선관위 소속 공무원
시·도 공직자윤리위원회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시·도 및 시·도의회 소속 4급 이하 공무원 • 관할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• 시·군·구의회의 의원, 시·군·구 소속 4급 공무원
시·군·구 공직자윤리위원회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시·군·구 및 시·군·구 의회 소속 5급 이하 공무원 • 관할 공직유관단체 임직원
시·도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시·도교육청 소속 4급 이하 공무원

【재산등록·공개 관련 의무 위반시 제재 및 주요 처분 사례】

■ 공직자윤리법상 위반내용별 제재

위반 내용	제재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공직자윤리위원회 심사 결과 등록대상재산을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빠트리거나 잘못 기재하거나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(법 제8조의2, 법 30조제2항제2호) ※ 다른 법령을 위반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면 법무부장관(군인·군무원은 국방부장관)에 통보 가능. 조세 관련 법령은, 국세는 국세청장 또는 관세청장에게, 지방세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 	경고·시정조치/ 2천만원 이하 과태료/ 해임 또는 징계의결 요구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재산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(법 제22조제1호) • 재산 변동사항 신고 또는 주식거래내역 신고(공개자)를 하지 아니하거나 소명자료의 첨부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(법 제22조제2호) • 허위등록 등 불성실하게 재산을 등록한 경우(법 제22조제6호) • 공직자윤리위원회 등의 재산등록사항 심사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(법 제22조제7호) 	해임 또는 징계의결 요구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소명 요구에 거짓으로 소명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(법 제22조제3호, 제30조제2항제2호) • 재산등록사항의 심사와 관련, 정당한 사유없이 소명 또는 자료 제출을 하지 아니한 경우(법 제22조제4호, 제30조제2항제3호) 	해임 또는 징계의결 요구/2천만원 이하 과태료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등록의무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재산등록을 거부한 경우 (법 제24조제1항) 	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공직선거후보자 등이 정당한 사유없이 등록대상 재산에 관한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(법 제24조제2항) • 재산등록사항의 심사와 관련,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출석 요구에 정당한 사유없이 응하지 아니한 경우(법 제26조) 	6개월 이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 벌금

■ 주요 처분 사례

• 총 3억원 이상 재산을 잘못 신고

○○도의회 의원 ○○○은 사전에 신청하여 받은 금융거래 및 부동산 정보 내역에 대한 사전 열람 없이 본인 및 친족의 재산 3억원 이상을 잘못 신고

▶ “과태료 부과 의뢰” 결정

• 재산 전체 항목을 “변동없음”으로 신고

○○부 서기관 ○○○은 잘못 신고한 금액이 경고처분 기준에 해당되나, 종전에 등록된 재산 내역과 전체 항목을 “변동없음”으로 신고하여 한단계 가중사항 적용

▶ “징계의결 요청” 결정

• 전년도 심사 시 경고처분 받고 재차 잘못 신고

○○시의회 의원 ○○○은 잘못 신고한 금액이 경고처분 기준에 해당되나, 전년도 심사시 경고 처분 받은 후 재차 잘못 신고하여 한단계 가중사항 적용

▶ “과태료 부과 의뢰” 결정

• 신고소득 대비 재산 과다 감소(분양권 누락)

○○부 서기관 ○○○은 재산변동신고시 6천만원의 소득을 신고하였으나, 재산은 전년 대비 1억원이 감소한 것으로 신고, 심사 결과 본인 건물의 분양권을 누락한 것으로 3억원이 넘게 잘못 신고함

▶ “징계의결 요청” 결정

• 직무관련자와 사인간 채권·채무 형성

○○시 주무관 ○○○은 재산변동신고시 사인간 채무 2억원을 상환한 것으로 신고 하였는데, 심사 결과 3년전 직무관련자로부터 무이자로 돈을 빌려 채권자가 권유한 주식에 투자한 것으로 밝혀짐

▶ ‘직무상 알게된 비밀을 이용한 재산상 이익 취득’ 의심 사례로 판단, 법무부에 조사의뢰하였으며, 조사결과에 따라 형사고발 조치

• 자녀의 주소지 건물 임차권 미신고

○○시 고위공무원 ○○○은 서울에서 직장생활중인 장남의 주소지 건물 임차권(전세가 1억2천만원, 의무자가 전세금 지원)을 미신고

▶ “경고 및 시정조치” 결정 및 세법 위반사항에 대해 국세청 통보

02 주식백지신탁

재산공개 대상자, 기획재정부 금융사무 관장 국 및 금융위원회의 4급 이상 공무원은 3천만 원을 초과하는 주식을 보유하는 경우, 1개월 이내에 매각, 백지신탁 또는 직무관련성 심사 청구를 하여야 합니다.

● 근거 조항

공직자윤리법 제14조의4, 제14조의5

● 대상자

재산공개 대상자(정무직 및 1급 이상 공무원 등), 기획재정부 금융사무 관장 국 및 금융위원회 소속 4급 이상 공무원

● 대상주식

본인 및 이해관계자 보유 주식 총가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주식

주식백지신탁 제도 적용 예외 주식

✓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에서 직무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결정·고시한 주식

- 『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』상의 투자회사 주식
- 『부동산투자회사법』상의 부동산투자회사 주식
- 『선박투자회사법』상의 선박투자회사 주식
- 외국에 주된 영업소 소재지를 두고 국내시장에 그 주식의 상장되지 아니한 외국기업의 주식
- 『해외자원개발사업법』상의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 주식
- 『문화산업진흥기본법』상의 문화산업전문회사 주식

✓ 근로복지기본법상 우리사주(의무예탁기간 중)

✓ 상법상 주식매수선택권(일명 스톡옵션)

✓ 랩어카운트(증권사와 계약하여 운영중인 일임형 랩, 자문형 랩)

※ 랩어카운트는 종목당 3천만원 초과시에만 대상주식으로 봄, 다만, 증권사가 아닌 투자자문사와 직접 투자일임계약을 맺은 경우에는 전체 보유주식 가액 3천만원 기준 적용



Q 의무예탁기간은 지났지만 인출하지 않고 장기간 보유만 하고 있는 우리사주도 주식백지신탁 제도 적용 대상인가요?

A 의무예탁기간이 만료되면 인출 여부와 관계없이 주식백지신탁 제도의 대상이 되므로, 1개월 이내 처분 또는 직무관련성 심사 청구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.

Q 출자지분 등도 처분이나 심사청구를 해야 하나요?

A 주식백지신탁 제도는 '주식'만을 대상으로 합니다. 합명·합자·유한회사 등의 출자지분은 대상이 아니므로 기준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처분하거나 심사를 청구할 필요는 없습니다. 다만, 공직자로서 공·사익간 이해충돌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.

Q 일임형 랩을 A, B, C 계좌에 각각 개설하였는데 특정 종목(예-○○전자) 주식이 A계좌에 1천만원, B계좌에 1천만원, C계좌에 2천만원 있는 경우, 각 랩 계좌별로 3천만원 이하이므로 주식백지신탁 제도 적용 대상이 아닌 것인가요?

A 각 랩 계좌에 분산되어 있더라도 같은 종목 주식의 총가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므로 주식백지신탁 제도의 적용을 받습니다.

Q 주가연계증권인 ELS나 지수연동형 펀드인 ETF 등도 주식백지신탁 제도 대상인가요?

A 해당 상품들은 주식백지신탁제도 대상이 아니며, 재산신고시에도 '예금'란에 신고합니다.

● **의무 발생일**

- 보유 주식이 3천만원을 초과하게 된 날(기준 주식이 상승하여 3천만원을 초과한 날 포함)
- 공개대상자 등이 된 날
- 변동사항 신고 유예사유가 소멸된 날
- 공개대상자 등의 직무(상임위원회, 보직 등)가 변경된 날
- 직무관련성 심사 결과 "관련성 있음" 결정을 통지받은 날
- 주식백지신탁 계약 체결 후, 상속·증여 등의 사유로 주식을 신규취득한 날



Q 지방의회의원인데 "직무관련성 없음" 결정 주식은 임기내 계속 보유할 수 있나요?

A 직위가 변경된 경우, 즉 상임위가 바뀌었거나 직위가 변경(일반 의원→의장)되었다면 다시 심사청구 등의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. 일반 공무원도 마찬가지로, 보직 이동 등으로 직위가 변경되었다면, 기존에 "직무관련성 없음" 결정을 받은 주식이라도 다시 심사청구 등의 의무 이행 대상이 됩니다.

● (조치사항) 기준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다음 조치사항 중 이행 필요

- (매각 또는 백지신탁) 매각 또는 백지신탁 후 재산등록기관에 신고
- (직무관련성 심사청구) 등록기관을 통해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(인사혁신처 설치)에 직무관련성 심사 청구
- (직위 변경) 보유주식과 현재 직위가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, 직위변경 후 직무관련성 심사 청구
 - ※ 직무관련성 심사에서 "관련성 있음" 결정 받은 주식의 총 가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1개월 이내에 매각 또는 백지신탁



Q "1개월 이내"에 주식백지신탁 관련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데, 정확한 기간 계산법은 어떻게 되나요?

A '민법'에 따라 기간을 계산합니다. 예를 들어 2월 5일에서 1개월 경과일은 3월 5일의 하루전인 3월 4일까지를 1개월로 계산하는 방식입니다(2월이 28일까지 있는 것은 상관없음). 만약, 해당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이 의무이행 기한이 됩니다.

Q "직무관련성 있음" 결정 주식의 가액이 3천만원 초과시 모두 처분해야 하나요?

A 전부를 처분(매각 또는 백지신탁)하거나 일부만 처분하여 "직무관련성 있음" 결정 주식을 3천만원 이하로 보유하는 것 모두 가능합니다.



Q “직무관련성 없음” 결정된 주식을 2천만원 추가 매입하고 새로운 주식을 2천만원 신규 매입할 경우 직무관련성 심사를 받아야 하나요?

A 직무가 변경되지 않는 한 “관련성 없음” 결정 주식은 얼마든지 추가매입이 가능하며, 신규 매입 주식은 3천만원 미만이므로 심사 청구 대상이 아닙니다.

Q “직무관련성 없음” 결정받은 주식을 매각했을 때에도 매각신고를 해야 하나요?

A “직무관련성 없음” 결정을 받은 주식은 자유롭게 추가 매입 또는 매각할 수 있으며, 매각하더라도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. 이와 달리, 직무관련성 심사를 받지 않고 매각하는 경우는 재산등록 기관에 매각신고를 하여야 합니다.

Q 직무관련성 심사청구를 한 후 해당 주식을 매각했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?

A 매각신고서를 제출하면 됩니다. 또한, 매각으로 인해 보유 주식이 3천만원 이하가 되었다면 심사청구 철회요청(시행규칙 별지 제14호의8서식)도 같이 하시면 됩니다.

Q 주식을 백지신탁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고, 주식은 어떻게 관리되나요?

A 신탁업무를 취급하는 금융기관과 신탁계약을 체결하면 됩니다. 백지신탁은 원칙적으로 수탁사가 60일 이내 수탁받은 자산을 처분하여 다른 자산으로 바꾸어 운영하여야 하며, 신탁자는 관련 정보에 접근할 수 없습니다. 다만, 60일 이내 처분이 되지 않을 경우 수탁사는 관할 공직자 윤리위원회의 허가를 얻어 처분시한을 연장(1회 30일 이내, 횟수 제한은 없음)할 수 있습니다.

● (제출서류) 매각 또는 백지신탁 신고, 직무관련성 심사 청구시 다음 서류 제출

- (매각 또는 백지신탁) 주식 매각·백지신탁 신고서(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의3서식), 주식 매각·백지신탁 공개목록(시행규칙 별지 제14호의4서식), 매각의 경우는 주식거래내역서, 백지신탁의 경우는 신탁계약서

- (직무관련성 심사청구) 직무관련성 심사청구서(시행규칙 별지 제14호의6서식), 상장주식의 경우 잔고증명서, 비상장주식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·재무제표·주주명부

※ 매각·백지신탁이나 직무관련성 심사 청구를 의무발생일로부터 1개월이 지난 후 조치하였다면 지연사유서(시행규칙 별지 제14호의5서식)도 함께 제출

※ 직무관련성 심사청구 후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의 결정이 있기 전까지 주식백지신탁 적용 대상 제외, 매각 등으로 주식의 3천만원 이하 보유, 직무관련성 심사 대상 주식이 아닌 것을 알게 된 경우 등에는 심사청구 철회 요청 가능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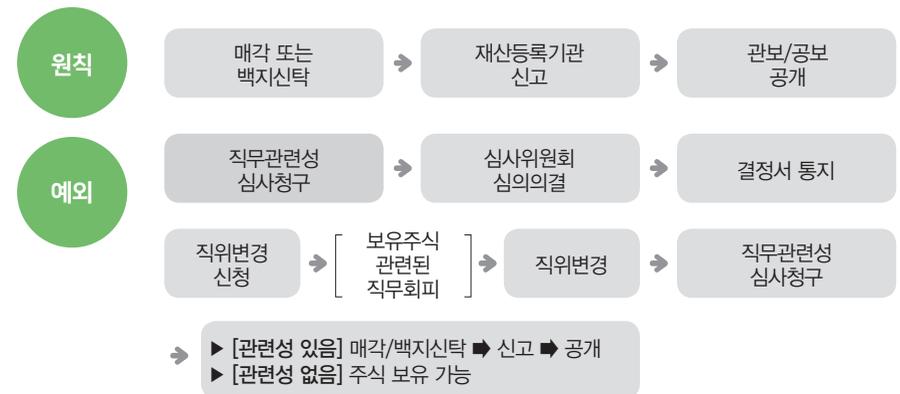


Q 직무관련성 심사를 청구할 때 어떤 서류를 제출해야 하나요?

A 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의6서식인 심사청구서와 함께 상장주식의 경우는 증권사 등 금융기관에서 발행한 잔고증명서를, 비상장주식의 경우는 법인등기부등본, 재무제표, 주주명부를 제출해야 합니다.

- (직무회피) 다음의 경우 해당 주식과 관련된 직무 관여가 금지되며, 회피가 불가능한 경우 관여 사실을 사후에 신고 및 공개
 - 백지신탁한 주식의 처분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
 - 직위변경을 신청한 후 직무관련성 심사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
 - ※ 해당 분기 말일부터 10일 이내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 신고, 위원회는 관보·공보에 신고 사항 공개

주식백지신탁제도 관련 절차



【주식백지신탁 관련 의무 위반시 제재 및 주요 사례】

■ 공직자윤리법상 위반내용별 제재

위반 내용	제재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주식매각 또는 백지신탁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(법 제22조제10호) 주식백지신탁 중 주식취득 제한 규정을 위반하여 주식을 취득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(법 제22조제11호) 계약해지 요건을 위반하여 주식백지신탁 계약을 해지한 경우(법 제22조제14호) 	해임 또는 징계의결 요구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백지신탁 중인 재산의 관리·운용·처분에 관한 정보의 제공을 요구한 경우(법 제22조제12호, 제28조의2제1항) 백지신탁 중인 재산의 관리·운용·처분에 관여한 경우(법 제22조제13호, 제28조의2제2항) 	해임 또는 징계의결 요구/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공개대상자 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자신이 보유하는 주식을 매각 또는 백지신탁하지 아니한 경우(법 제24조의2) 	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백지신탁한 주식 또는 보유하고 있는 주식과 관련한 직무를 회피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, 해당 주식과 관련한 직무에 관여하였거나 직무 관여 사실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(법 제22조제14의2호, 제30조제3항제1호) 	해임 또는 징계의결 요구 / 1천만원 이하 과태료

■ 주요 처분 사례

• 재산공개대상자가 된 후 8개월 이상 의무 미이행

○○대학교 총장 ○○○은 19억원 상당의 주식을 보유한 상태에서 총장에 취임, 재산공개 대상자가 됨으로써 주식백지신탁 의무가 발생하였으나, 8개월 이상 경과한 후에야 주식 직무관련성 심사 청구

▶ “과태료 부과 의뢰” 결정

• 직위가 변경되었음에도 1년 7개월 이상 의무 이행 지연

○○도의회 의원 ○○○은 문화관광위 당시 배우자가 보유한 ‘○○건설’ 주식에 대해 “직무관련성 없음”을 결정 받았으며, 이후 상임위가 건설교통위로 변경되어 새로이 의무가 발생하였음에도, 1년 7개월 이상 경과한 후에야 주식 직무관련성 심사 청구

▶ “과태료 부과 의뢰” 결정

03 선물신고

공무원(지방의회의원 포함)과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은 외국정부로부터 10만원 이상의 선물을 받거나 직무와 관련하여 외국인(외국단체 포함)으로부터 10만원 이상의 선물을 받은 경우, 소속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.

● 근거 조항

공직자윤리법 제15조

● 대상자

공무원(지방의회의원 포함), 공직유관단체 임직원

※ 공무원 및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의 가족도 포함

● 대상선물

– 외국정부로부터 받은 10만원(미화 100달러) 이상의 선물

– 외국인(외국단체)으로부터 직무와 관련하여 받은 10만원(미화 100달러) 이상의 선물

● 조치사항

– 위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시장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 서식에 의해 소속기관(단체)의 장에게 신고

– 다만, 가액을 알 수 없으나, 누가 보아도 10만원 미만(기념품 수준 등)으로 보이는 경우에는 신고 불필요

※ 가액을 판단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선물평가단 회의를 거쳐 접수·결정하므로 기관윤리담당자에게 문의 후 조치

● 소속기관의 조치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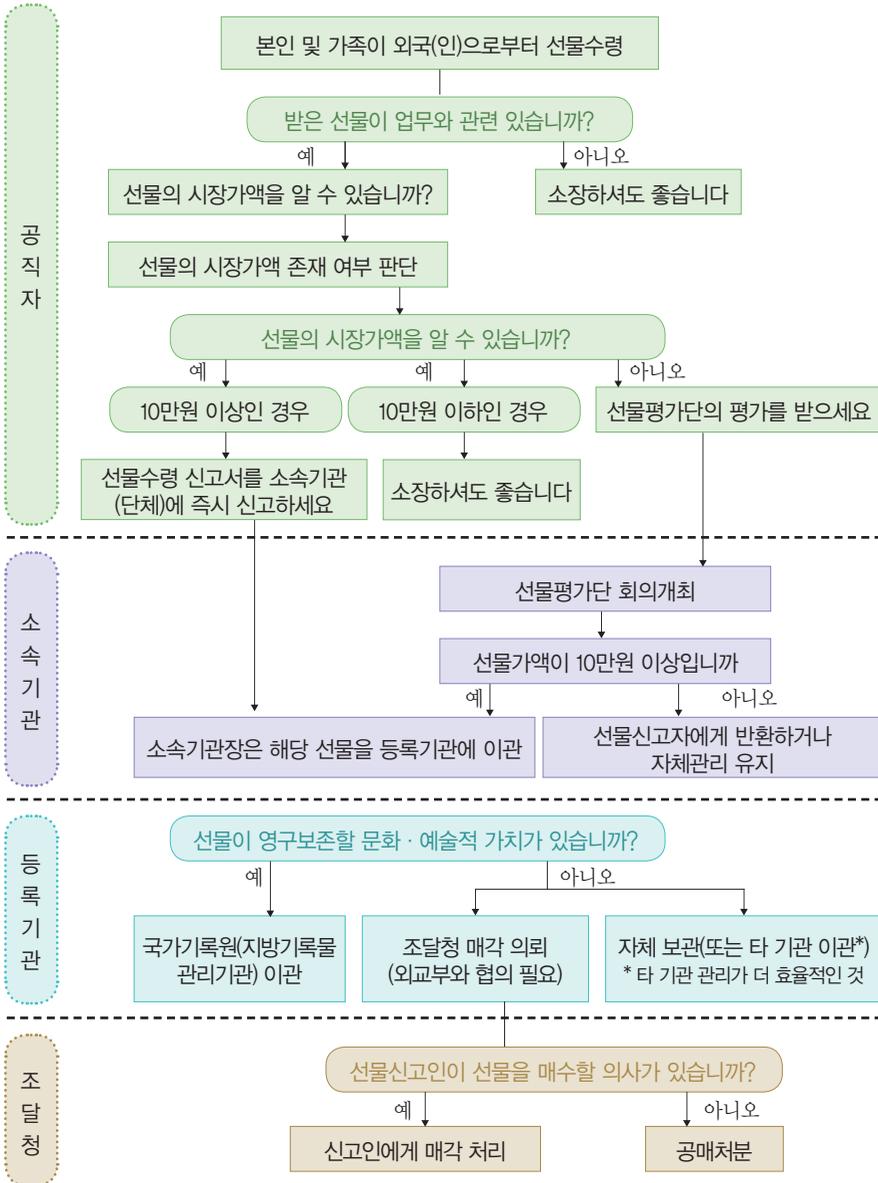
– 선물의 시장가액이 10만원 이상인 경우 : 선물신고 접수

– 선물의 시장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 : 선물평가단 회의를 거쳐 접수여부 결정

• 평가액이 10만원 이상인 경우 : 선물신고 접수

• 평가액이 10만원 미만인 경우 : 신고자에게 반환하거나 기관 자체 관리·유지

선물신고 및 관리 절차



Q 직무와 관련한 공적으로 외국(인)으로부터 상을 받았는데, 그 시상금(부상품)을 선물로 신고해야 하는지요?

A 부상은 상품의 형태이든 상금과 같은 금전의 형태이든 공직자윤리법상의 '선물'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.

Q 부패가 쉬운 음식물이나 생물을 선물 받은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?

A 이에 대해 특별한 법적 규정은 없으나, 이를 보관하거나 관리하기 어려우므로 우선 소속기관 윤리담당자와 상의한 후 '선물평가단'에서 결정한 처리방안에 따라 조치하시기 바랍니다.

Q 선물신고 대상이지만 개인적으로 소장하고 싶은데 방법이 없는지요?

A 10만원을 초과하는 선물이라면 소속기관에 신고 및 제출해야 하므로, 개인이 소장할 수 없음이 원칙입니다. 다만, 해당 선물이 국유재산으로 관리·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조달청장에게 이관하여 처분하게 할 수 있는데, 이 경우 선물의 수령을 신고한 사람이 그 선물의 매수를 원하는 경우에는 전문기관에서 감정한 가액으로 우선하여 매도하여야 하므로(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0조제2항), 그런 경우에 한해 본인이 매수하는 방법으로 소장할 수 있습니다.

【선물신고 의무 위반시 제재】

위반 내용	제재
• 외국 또는 외국인에게 받은 선물을 신고 또는 인도하지 아니한 경우(법 제22조제15호)	해임 또는 징계의결 요구

04 부정청탁·알선 신고

공무원 및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은 퇴직공직자로부터 부정한 청탁·알선을 받은 경우 이를 소속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.

- **근거 조항**
공직자윤리법 제18조의4제2항
- **대상자**
퇴직공직자로부터 부정한 청탁·알선을 받은 공무원 및 공직유관단체 임직원
- **신고절차**
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 별지 20호의6 서식에 신고자 및 청탁·알선을 한 퇴직공직자의 인적사항, 청탁·알선을 한 일시·장소·내용 등을 기재하여 소속기관의 장에게 신고
- **신고자 보호**
신고자의 신분은 본인의 동의 없이 공개할 수 없으며, 소속기관으로부터 징계조치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 금지. 단, 거짓신고한 경우 제외



Q 현직에 있는 공무원이 퇴직공무원으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은 사실을 신고하면 불이익을 받을 우려는 없는지요?

A 공직자윤리법 제18조의4에 따라 신고자의 동의 없이 신고자의 신분을 공개할 수 없고, 신고로 인한 징계조치 등 어떤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의 차별도 금지되므로 진실한 사실을 신고한 경우 불이익은 염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.

【부정청탁·알선 신고 의무 위반시 제재】

위반 내용	제재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퇴직공직자로부터 부정한 청탁 또는 알선을 받은 사실을 소속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(법 제22조제16호) 	해임 또는 징계의결 요구

